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등〉

■ 임호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556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등	3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별도 기준 신설	10
3.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14

I. 제안경위

2026년 2월 4일 임호선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이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직접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처리시설 인접 지역 주민들은 악취, 대기오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

또한, 관할 구역 밖에 소재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비용 부담, 관리 책임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관할 구역 밖에 위치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관할 구역 밖 반출 실태를 포함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제4항 및 제5조의4 신설, 제5조의3제1항·제3항).

Ⅲ. 검토의견

1.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 확대 등

개정안은 ① 관할 구역 외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②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을 민간폐기물처리시설 반입분까지 확대하며, ③ 처리시설이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경우 반입협력금 사용 지역에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3항 및 제5조의3제1항·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② (생략) <u><신설></u>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u>반입하여</u>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 ----- ----- <u>반입(민간</u>

현행	개정안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u>지역</u>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2. ~ 4. (생략)	<u>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반입한 것을 포함한다)하여</u>-----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u>지역(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경우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포함한다)</u>----- ----- 2. ~ 4. (현행과 같음)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¹⁾ 및 반입협력금 제도²⁾는 기초지방

1)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내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관할 구역을 대상 지역으로 하는 제5조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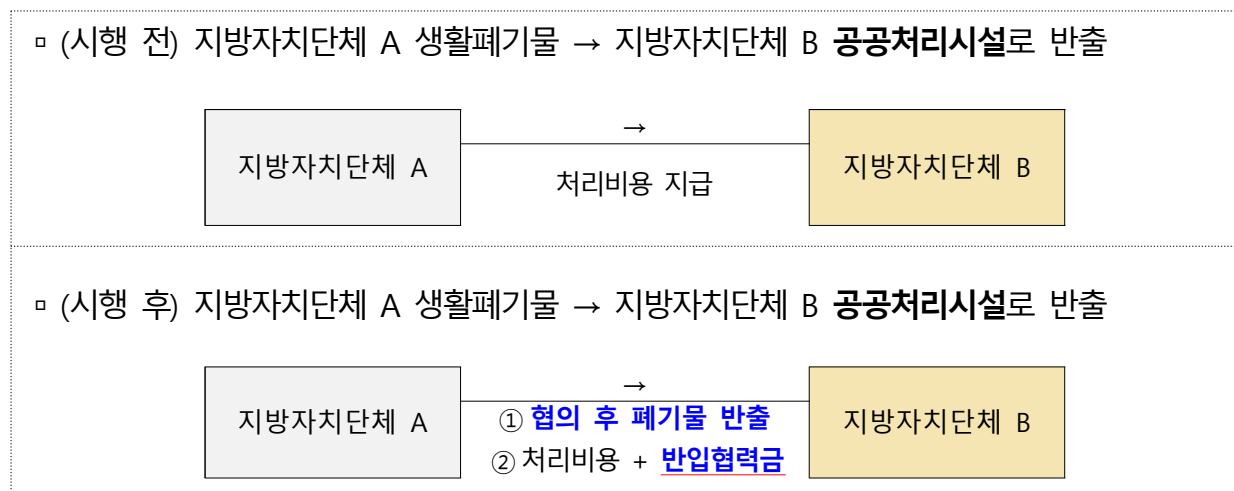
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을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반입하여 처리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생활폐기물을

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발생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되,

생활폐기물이 발생지 외에서 처리되는 경우 이를 처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입협력금을 징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2022. 12. 27. 「폐기물관리법」 개정(2024. 12. 28. 시행)을 통하여 도입되었음.

【 발생지 처리 원칙 및 반입협력금 시행 전·후 비교 】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반출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반입협력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은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반입협력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반입협력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3.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체적으로 반입협력금은 공공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 및 음식물 폐기물을 대상³⁾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한액⁴⁾의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징수함.

한편, 생활폐기물 주체별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처리는 2021년 1,095만톤에서 2023년 1,040만톤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민간 위탁처리가 2021년 576만톤에서 2023년 623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음.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3호에 따른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반입협력금의 징수) ② 법 제5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운영비를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

「생활폐기물 반입협력금 산정에 관한 고시」(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제2조(반입협력금 금액) 반입협력금은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류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반입협력금 징수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한다.

1. 소각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25,000원으로 한다.
2. 매립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0,000원으로 한다.
3. 음식물류 처리시설은 반입되는 폐기물 톤당 15,000원으로 한다.

【 생활폐기물 주체별 처리현황 】

(단위: 만톤)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공공	자가	위탁	공공	자가	위탁	공공	자가	위탁
총 계	1,095	4	576	1,060	5	611	1,040	6	623
매 립	247	-	1	211	-	1	177	-	1
소 각	440	-	61	428	-	67	434	-	64
재활용	401	4	510	408	5	540	421	6	552
기 타	7	-	4	13	-	3	8	-	6

자료: 국가통계포털-“폐기물 처리주체별 처리현황_생활폐기물” 재구성

또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간업체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되어 처리되는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6년 1월~2월 두 달간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47만 9,000톤인데, 이 중 공공처리는 84.5%(40만 4,400톤), 민간처리는 15.5%(7만 4,200톤)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민간 처리 물량 중 1만 600톤(14.2%)은 충청권에 소재한 업체로 반출되어 처리되었음.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충청권 4개 시도(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공동 대응⁵⁾에 나서는 등 민간 위탁처리를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5) 세종특별자치시 보도자료, “충청권,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공동 대응 강화”, 2026. 1. 27.

- 공동 대응 방안: ① 쓰레기 유입 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보 공유, ② 불법·편법 반입 의심 처리업체 공동 점검 및 단속 협력, ③ 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 가동

이에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민간 위탁 처리 시에도 지방자치단체 간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경우 반입협력금 사용 지역에 인접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간 경로를 통한 변칙적 역외 반출을 차단함과 동시에 민간폐기물처리시설 접경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완화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의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특히, 안 제5조의2제3항⁶⁾ 신설은 현행법상 의미가 중복될 소지⁷⁾가 있지만, 현행법상 민간 위탁을 통한 역외 반출이 사각지대로 이용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의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여 법적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단체인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첫째, 안 제5조의2제3항 및 제5조의3제1항과 관련하여, 민간 대행

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6556)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무가 해당 사무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포괄적 의무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는 공공처리 또는 민간 위탁 등 처리 방식과 관계없이 모두 발생지 처리 원칙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임.

처리는 현행 규정으로도 발생지 처리 원칙이 적용되므로 추가 개정의 실익이 낮고,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현행법 시행규칙상 '공공폐기물 처리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문제는 하위 법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임.

둘째, 안 제5조의3제3항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지방자치단체 경계 인근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간 소각시설 업계의 자체적인 지역공헌사업⁸⁾이나 반입협력금 징수 지방자치단체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를 통한 주민 지원 등의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개정안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등 4개⁹⁾ 지방자치단체는 사전 협의로 인한 행정 절차 지연을, 인천 동구 등 4개¹⁰⁾ 지방자치단체는 반입협력금 부과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을 우려한 반면, 충청북도와 강원도는 오히려 중간가공폐기물 처리시설을 포함하여 사전 협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따라서, 개정안은 ①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 확보 및 지역 갈등 완화 필요성, ② 법령 체계의 정합성, ③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수용성 및 업계의 자구책에 대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8)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지역 상생 법제화(기금 신설 / 지방세 부과)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2026년 상반기 중 투명성 있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업계 자체 상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9)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안양시

10) 인천광역시 동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강원도 양구군, 세종특별자치시

2.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별도 기준 신설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 시 역외유출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관하여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②(생략) <u><신설></u>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①·②(현행과 같음) ③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민간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④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에 관하여 대통</u>
<u><신설></u>	

현행	개정안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¹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제1항), 이 경우 대통령령¹²⁾으로 정하는 바에

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1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삭제 <2016. 11. 29.>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삭제 <2019. 6. 25.>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이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이라 함)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제2항).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의 장거리 반출 억제를 위해 민간 위탁 계약 시 이송 거리나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한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반출 물량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관리 권한 및 통제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내용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정 경쟁 등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1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로부터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가.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한국폐기물협회 또한 지역·거리 제한을 통한 강제적 규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3.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개정안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민간 위탁 처리를 포함한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을 연 1회 수립하도록 하고, ② 해당 계획에는 관할 구역 내 처리 현황, 관할 구역 외 반출 폐기물의 반출 사유 및 처리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하며, ③ 수립된 처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4(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및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 2.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출 사유 및 처리 현황 3.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

현행	개정안
	<u>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③ <u>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u>

이러한 개정안은 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전반적인 처리 현황과 관할 구역 밖으로의 장거리 반출 사유 및 현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매년 수립·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이미 생활폐기물 중 다량으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수립¹³⁾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농약·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시설 설치 현황 등을 포함한 처

13)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음식물류 폐기물의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5.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주기,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¹⁴⁾하고 있음.

또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¹⁵⁾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폐기

14)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이하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라 한다)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2.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 ②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 제1항에 따른 처리계획 수립의 주기·절차 및 추진성과의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조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종류로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 폐페인트, 폐광택제, 폐접착제 등이 규정되어 있음.

1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 등을 반드시 포함하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의무가 있음.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생활폐기물 처리계획의 관할 구역 내 폐기물 처리 현황, 감축 방안 등은 현행법령에 따른 음식물류·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상의 연차별 집행계획과 그 대상 및 내용 면에서 상당 부분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바,

새로운 계획을 별도로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연차별 집행계획 등에 개정안의 취지인 '민간 위탁 및 역외 반출 현황'을 추가 항목으로 반영하여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한국폐기물협회 등 관계 기관 역시 기존 계획에 개정안의 취지를 보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